

## 다문화가정 해외물류비 지원 공익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서

강원지방우정청과 강원도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 및 따뜻한 나눔문화 실천을 위하여 ‘다문화가정 해외물류비 지원 공익사업 공동추진’에 대한 업무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**제1조(협약의 목적)** 본 협약은 강원도 지역 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모국으로 발송하는 국제특송우편(EMS)에 대하여 강원지방우정청은 우편요금을 할인하고, 강원도는 산하기관 및 다문화가족에게 사업취지를 홍보하여 다문화가족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국제특송우편(EMS)을 이용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.

**제2조(다문화가족의 정의)** ‘다문화가족’이라 함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(정의) 제1항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주요 협약사항)** ① 강원지방우정청은 다문화가족에게 아래에서 정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. 다만, 이용금액에 따라 매년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다.

요금할인	국제특송(EMS, EMS프리미엄)요금 10%* 할인
할인대상	① 외국인등록증에 ‘국민의 배우자’ 또는 체류자격 ‘F-6-1, F-6-2, F-6-3’으로 명시된 자 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결혼이민자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③ 국적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자(사본 가능)
요금납부	현금, 신용카드

\* 요금할인을 8%→ 10%로 상향조정(2018.10.1. 협약부터 적용)

② 강원도는 시·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, 다문화가족 등에 협의내용을 적극 홍보·안내한다.



제4조(협약의 효력 및 기간) ① 본 협약의 기간은 2018. 10. 1.부터 2019. 9. 30.까지(1년)로 하며, 협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동 내용으로 1년 마다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우편서비스 및 협약내용(감액률 등)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협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여야 한다.

제5조(개인정보의 보호) 강원지방우정청과 강원도는 다문화가족 공익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, 해지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.


제6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 ① 본 협약에 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따라 변경·해지 할 수 있다.

② 강원지방우정청과 강원도는 상대방이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제7조(분쟁 및 해석) 강원지방우정청과 강원도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
이상과 같이 '다문화가정 해외물류비 지원 공익사업 공동추진'에 관한 내용을 증명하고, 상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업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각각 1부를 보관한다.

2018년 10월 1일

 강원지방우정청

강원지방우정청장(인)



 강원도

강원도지사(인)



지정인

인